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3265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2. 4. 26.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4.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3,815,790원, 지방교육세 276,763,1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8. 1.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구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법인 구 주식회사 A 소유로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등록을 마친 회원제 골프장인 ○○시 B 외 64 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위 부동산 일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8,534,571,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에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1천분의 15)로 산출한 취득세 1,628,018,570원, 지방교육세 325,604,710원, 합계 1,953,622,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4.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특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구 지특법 제57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존의 회원제골프장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 지특법 제177조에서 정한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특법 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특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구 지특법 제5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규정

①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외국산 고급자동차 기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세율은 전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¹⁾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100분의 750으로 개정되었다.

② 위 규정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施設을 增設하여 變更登録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호에서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으로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 취득세가 중과되며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③ 이후 위 규정은 2003. 12. 30. 개정되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었고, 이후 조문위치 변경, 일부 표현 수정 등을 거쳐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이르게 되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

1) 이러한 골프장, 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과세대상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문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결정).



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의 규정 중 골프장에 관한 제2호의 규정은 종전과 동일하다.

2) 이 사건 감면규정 및 감면제외규정

① 구 지특법 제57조의2 제1항은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고, 구 지특법 제177조는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감면제외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②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91조가 '사치성 재산의 감면 제외'라는 표제 하에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입법취지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 취득의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이다. 이후 2010. 3. 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로 이동하면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과 같이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다."라고 규정되었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조문 이동 등의 개정을 거쳐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 이르게 되었다.

③ 한편,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는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호에서 직접 감면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해석

①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위와 같은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은 처음 도입된 이래 내용과 형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고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개정 전후의 규정과 비교하여 표현의 변화가 있을 뿐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라는 문언은 '제13조 제5항 각호에 기재된 부동산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이지 나아가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의 효과가 발생하는 부동산등'이라고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 외에도 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재산세의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이 위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



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건축물보다 높은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그에 대하여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라는 문언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호에 기재된 부동산 등'으로 해석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의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입법취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를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호에 기재된 부동산등'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결국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정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사치성 재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는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며,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종과기준세율(이하 "종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종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종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제15조(세율의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종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